

행정안전부



보다나은 정부

수신 2019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단체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통보

-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17호(관보고시일 2019.6.28.) 와 관련됩니다.
- 2. 귀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부금민간단체 지정 후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정기간: 2019.1.1. ~ 2023.12.31.(5년간)
 - * 2023년 재지정 대상
 - 나. 의무사항: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붙임2 참조)
 - 향후 5년간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수지결산서(붙임3), 국세청 (홈텍스)에 수입명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함
 - 단체 홈페이지에 매년 3.31일까지 결산내역 공지 등
 - 단체명·대표자·주무관청 변경, 단체해산 및 법인으로 전환 시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통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변경요청 하여야 함
 - 다.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민간협력-기부문화) 관련자료 게시
- 붙임 1. 2019년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공고 1부.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 1부.
 - 3. 결산보고서 및 사업수지결산서(서식) 1부.
 - 4. 수입명세서 1부(서식). 끝.





주무관

고은숙

서기관

이상락

민간협력과장 전결 2019. 6. 25. **안병회**

협조자

시행 민간협력과-3288

(2019. 6. 25.)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184 팩스번호 044-204-8946 / esko22@korea.kr / 비공개(5)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19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61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내외동포정보센터 (KIC)	귀향(환)동포 안심귀국 및 안정정착지원 청년 해외취업 및 국외이주 지원, 한류문화진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내와동포지도자 한민족정보망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취약계층의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 하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취약계층의 안정성 제고 및 한국사회 통합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둔다
3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 인권옹호,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사회통합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나눔의쉼터 사랑더하기	장애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 독거노인들의 행복과 삶의 질 항상을 실현 다문화가정 및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항상을 실현한다.
5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다양성과 포함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호적 소수자 약자의 임파워먼트와 정체성별 특권 그룹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유니버설문화원	경로당, 노인당 반찬지원, 쉼터운영, 이주노동자 한글 교실운영, 이주민 소모임 활동지원
7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34	수지사랑회	사회의 저소 득층을 발굴하여 그들을 도움으로써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 지원사업
35	해맑음	어르신들의 정서심리안정과 치매 방지를 위하여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 재능 후원활동, 어려운 가정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 교육 활동
3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건강한 민주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	한국납세자연맹	세금낭비 감시 및 납세자 권익보호등을 위한 시민운동
38	통일드림	청소년을 위한 공감통일동이리 시업, 통일교육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구재 개발, 평화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워크숍, 독서문화 운동, 문화예술인 지원
39	아름다운 재능기부 다드림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
40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	색체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41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들의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한 정책제시와 실현을 위한 사업
42	수원환경운동센터	지역의 환경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시민환경교육
4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와 통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대중적 실천활동 및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사업 추진
44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복지 지원사업, 결혼이 민자, 이주여성, 난민, 이주 아동 등의 지원사업 등이 있다
45	코리아글로브	역사관 확립을 위한 헌정사 기행 및 올바른 정치의식형성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등
46	광주노동자교육센터	노동현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운동의 발전과 단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4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법	법률·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48	뉴호프재활재단	북한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의족, 의거를 제작제공하고 다리교정, 휄체어등의 소모품을 무료로 제공함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구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2항
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 →기획재정부(지정)	국세청장(요청)→기획재정부(취소)
요건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마.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요건과 다른 경우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